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10. 1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2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과 운영에 대한 투명한 감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 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청렴옴부즈만”(이하“옴부즈만”이라한다)이라 함은 개발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1. 복지·회계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5. 기타 일자리 업무분야 관련성 또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전문가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옴부즈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심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 비밀유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음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제6조(음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음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무의 확인과 처리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2. 음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개발원 윤리경영 또는 반부패청렴시책 제고를 위한 자문·건의·제안
4. 개발원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5. 개발원 주요 계약 및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음부즈만 활동을 요청받은 건에 대한 모니터링
6. 기타 감사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한 자문·건의·제안·의견 제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4. 대외비에 해당하여 원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배제·회피·기피) ① 음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배제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② 음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음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 및 활동) ① 감사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음부즈만 회의 또는 활동을 수행 한다.

② 음부즈만 회의 또는 활동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음부즈만 직무수행 후 자문, 의견, 권고 등 사항이 있을 때 감사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비밀유지) 음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문서 등을 제3자에게 임의로 비밀누설·공표·배포·유포 및 도용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읍부즈만 회의 등에 참여할 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옴부즈만 의견서			
제 목			
대상부서	부서명		담당자
처리구분	<input type="checkbox"/> 시정권고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자문 <input type="checkbox"/> 건의·제안 <input type="checkbox"/> 의견제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견내용			
<p>「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렴옴부즈만 (서명 또는 날인)</p> <p>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p>			